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911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평가지표의 적절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자료 제출 부담경감을 위해 일부 평가항목을 제외하는 등 평가지표를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 수를 위원장을 제외한 10명 이상 30명 이내 선임하도록 하고, 경제, 사회, 환경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평가자료 제출기한을 평가시행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평가 주기를 다양화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3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부담 경감과 평가지표의 형평성, 적절성 및 시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현행 75개에서 51개로 줄이는 등 개선(안 별표 1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7. 8.(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 전화 044-201-4972 / 4843, 팩스 044-201-55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4972 / 4843, fax 044-201-5569)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